

# 화성상공회의소

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 
031-350-7942 / alsps5@korcham.net / 조사진흥팀 / 민혜민

화상조 : 제 1616 호 2025. 1. 10.  
수 신 : 기업 대표(이사)  
참 조 : 환경 및 ESG 담당자  
제 목 : 「경기 기후환경협의체」 추진 사업 안내 및 정기총회 개최 알림

1.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경기 기후환경협의체」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협의체 안건을 심의하고, 화성시 기업의 환경 배출업소 및 자율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를 진행하오니 화성시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가. 일 시 : 2025.01.16.(목) 10:00 ~ 11:00  
나. 장 소 :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  
다. 대 상 :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가입 기업 및 자율점검 관심 기업  
(미가입 기업 또한 참석 가능)



라. 세부내용

소요시간	내 용	비 고
10:00~10:45	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정기총회 (정관 개정, 임원 선출, 사업계획)	화성상공회의소
10:45~11:00	경기도 사업 및 화성시 자율점검제도 지정 절차 안내	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화성시 환경지도과

마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→기업지원사업 게시판)  
(<https://walla.my/v/ZhoV6FfxOyJVFNpRQ1pf>)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혜민 매니저(☎031-350-7942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붙 임 :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1부. 끝.

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



# [붙임]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

구 분	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
<p>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</li> <li>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하거나, 「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</li> <li>3.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</li> <li>4.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</li> </ol>
<p>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</li> <li>2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</li> <li>3.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</li> <li>4.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</li> <li>5.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</li> <li>6.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</li> <li>7.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</li> <li>8.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</li> </ol>
<p>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</p>	<p>「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」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</p>
<p>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,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</p>	<p>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</p>
<p>기타 수질 오염원만 있는 경우</p>	<p>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-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</p>
<p>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</p>	<p>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</p>
<p>폐기물 수집·운반업 (임시보관시설 미보유)</p>	<p>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종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</p>